

2023년도 제3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2. 13.(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강태욱, 김춘식, 정경오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전차(제2023-30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대행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28건(안건번호 제2023-254894호~제2023-25556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54894호(순번 1번)는 블로그에서 음악 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개인 감상 글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54895호~254899호(순번 2번~6번)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54900호(순번 7번)는 게시자가 해당 계정을 탈퇴하여 동일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시정권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254901호~254902호(순번 8번~9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

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254903호~254909호(순번 10번~16번)는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 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0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30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민영 주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 내지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이숙형 부장: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정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숙형 부장: 금일 심의안건은 25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92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감상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작성하면서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감상 글을 본문에 게시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개인 감상 글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은 인정되나, 음악저작물 전체 분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물을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이용할 유인이 크게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음악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불법복제물에 대한 감상, 분석 등 직접 작성한 글 또는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 저작권 문제가 없는 저작물을 함께 게시하여 나름의 창작성 구성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 사안과 달리 볼 필요성이 있음.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을 전송하면서 게시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감상 글을 함께 게시한 사안으로, 게시물이 삭제·전송 중단이 될 경우 게시자로서는 기타 저작권 문제가 없는 개인의 표현 영역까지 전부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 안내의

목적으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순번 1번처럼 인용되는 저작물이 본인이 작성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 A,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 불법복제물의 교환·판매 거래글이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9건임.

(순번 5번 및 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현상공연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교환 또는 판매하고 있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 목록 등이 다수 게시되어 있음.

다만, 순번 7번의 경우 심의일 현재 해당 블로그는 폐쇄된 상태임. osp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블로그 자체만을 삭제하는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삭제를 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여야만 함. 더불어 이때 삭제된 블로그 데이터는 서버에서 파기되므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음. 즉 순번 7번의 게시자 계정

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 완전히 파기된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 블로그 게시물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쇼핑몰의 제품 판매 게시물과 동일하게 불법복제물을 판매하는 것임. 게시물의 내용 및 비밀댓글 개수에 비추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비추어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시물이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해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순번 7번의 경우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일한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재차 일어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점, 존재하지 않는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 의견.

- A 위원: 순번 2번 내지 6번은 뮤지컬 촬영 영상 등의 교환 및 판매

거래글에 대한 내용으로 게시물의 내용 및 댓글 등의 증거를 보았을 때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중인 바, 이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가결 의견임.

순번 7번은 해당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없으므로 부결 의견임.

- B, C, D 위원: 이견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번~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순번 7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번~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2건임.

(순번 8번 및 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 주면서)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게시물이 작성되었고, 저작권 침해 방조가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시정권고의 대상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A, B,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8번~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번~16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물, 출판물을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13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10번~16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0번~1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이숙형 부장: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7번~66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903개

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더 마블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6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더 마블스'의 97분 전체분량을 38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8.에 개봉한 미국 액션 영화임.

(영화 '독전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57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독전2'의 116분 전체분량을 2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1. 17.에 공개된 국내 액션 영화임.

(방송 '우리 변호사는 손이 많이 간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66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우리 변호사는 손이 많이 간다' 6화 약 47분의 전체분량을 17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0. 13.에 방영 시작한 일본 법정 드라마임.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이숙형 부장: 순번 17번~66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7번~66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54894호(순번 1번)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54895호~254899호(순번 2번~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54900호(순번 7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54901호~254902호(순번 8번~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54903호~254909호(순번 10번~1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254910호~255562호(순번 17번~66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3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3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2. 20.

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위원 강태욱

위원 김춘식

위원 정경오